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 - 43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4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,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개정 표준안에 따라 조례 일부 개정

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주민의 장례비·치료비 지원기준 등 신설 (안 제4조)
- 나.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은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전액을 구상하도록 신설(안 제4조의2, 안 제4조의3)
- 다.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부칙 신설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9. 3. 14. ~ 2019. 4. 3. (의견제출 없음)

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
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9.4.16.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, 치료비 지원

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.

1. 장례비 :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

2. 치료비 :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·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지원금액 등의 구상)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(이하 “원인제공자”)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.

제4조의3(구상에 따른 책임)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5조 중 “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”를 “원인제공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”을 “생활안정지원, 간접지원 및 장례비·치료비 지원”으로 한다.

부칙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를 “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로 한다.

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<신 설>

제5조(중복지원 금지)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)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(이하 “생활안정지원등”이라 한다)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.

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(이하 “원인제공자)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.

제4조의3(구상에 따른 책임)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5조(중복지원 금지) -----

----- 원인제공자 -----

-----.

제6조(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) ① 생활안정지원, 간접지원 및 장례비·치료비 지원-----

-----.

② ~ ⑥ (생략)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설>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(현행과 같음)

제1조(시행일) -----
-----.

제2조(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제4조(지원기준)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(이하 “생활안정지원”이라 한다)
2.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(이하 “간접지원”이라 한다)
3.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(이하 “피해수습지원”이라 한다)
4.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, 치료비 지원
5. 그 밖에 구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, 피해상황,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.

1. 장례비 :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
2. 치료비 :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·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사회재난 피해자 구호 및 복구지원 비용은 재난발생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재난의 유형과 피해규모, 범위 등에 따라 비용 규모가 유동적임으로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.
- 따라서,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피해 발생에 따라 예비비, 기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.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행정국 총무과 임종문
연락처	02-3153-8242